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594

발의연월일: 2024. 7. 10.

발 의 자:서삼석·문대림·임호선

이병진 • 박희승 • 복기왕

정을호 • 이개호 • 윤준병

문금주 의원(10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도서주민의 해상교통수단을 확보하기 위하여 항로 운영의수익성이 낮아 선사가 운항을 기피하는 항로를 국가가 운항에 따른 결손금액을 보조하는 항로(이하 "보조항로"라 함)로 지정하고, 기존 내항여객운송사업자 중에서 보조항로를 운항할 사업자를 선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연안여객선의 영세성과 노후화, 경영 악화 및 선원 초고령화 등의 문제가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어 안전사 고의 발생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함. 또한 섬 주민 삶의 불편 사항을 개선하고, 주민과 국민 모두의 안전을 위하여 섬 지역 교통의 기본 여 건이 되는 연안여객선 공영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이에 연안여객선 공영제의 조기 실현을 위해 기존의 보조항로를 공 영항로로 지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등에 공영항로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상교통의 안정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 가. 국가가 운항에 따른 결손금액을 보조하던 항로를 국가가 운영하는 항로인 공영항로로 지정하고 해당 항로의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제1항).
- 나. 공영항로에 대하여 내항여객운송사업자의 사업 수요가 생긴 경우해당 항로의 공영항로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제6항제2호).
- 다.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해상교통 공백의 방지를 위하여 내항 여객운송사업자 뿐만 아니라 공영항로운영기관에도 여객선의 운항 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여객선의 일시적 운항 중단 등의 사유로 인하여 해당 항로에 대하여 운항을 명할 공익상 필요성이 있는 경 우에도 운항을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제1항).
- 라. 해양수산부 장관의 권한 또는 업무를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도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53조제2항 신설).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 제목 중 "보조항로"를 "공영항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운항에 따른 결손금액을 보조하는 항로(이하 "보조항로"라 한다)를 지정하여 내항여객운송사업자 중에서 보조항로를 운항할 사업자(이하 "보조항로사업자"라 한다)를 선정하여"를 "운영하는 항로(이하 "공영 항로"라 한다)를 지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등(이하 "공 영항로운영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하여"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보조항로의 운항계획"을 "공영항로의 운항계획"으로, "보조항로의 운 영"을 "공영항로의 운영"으로. "해양수산부장관이 보조항로사업자와 합의하여 정한다"를 "공영항로운영기관이 해양수산부렁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계획을 수립한 후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보조항로사업자가"를 "공영항로운영기관이"로. "보조항로의"를 "공영 항로의"로, "그 보조항로사업자"를 "공영항로운영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조항로의 운영"을 "공영항로의 운영" 으로. "보조항로의 지정"을 "공영항로의 지정"으로 하며. 같은 항 제2 호 중 "운항결손액에 대한 보조금 없이 해당 항로의 운항을 할 수 있

게 된 경우"를 "해당 항로에 대하여 내항여객운송사업자의 사업 수요가 생긴 경우"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보조항로"를 "공영항로"로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보조항로의 지정 및"을 "공영항로의 지정 및"으로, "보조항로의 지정절차, 보조항로사업자의 선정 방법, 운항결손액의 결정과 지급방법"을 "공영항로의 지정 기준 및 절차"로 한다. 제15조의2제1항 중 "보조항로"를 "공영항로"로 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여객운송사업자"를 "공영항로운영기 관 또는 여객운송사업자"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여객선의 일시적 운항 중단 등의 사유로 인하여 해당 항로에 대하여 운항을 명할 공익상 필요성이 있는 경우

제50조제2항제2호 중 "보조항로의 지정"을 "공영항로의 지정"으로, "보조항로 운항명령"을 "운항명령"으로 한다.

제53조의 제목 "(권한의 위임 및 위탁)"을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또는 해운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2항"으로, "단체의 임직원"을 "단체, 지방공사, 한국해양

교통안전공단의 임직원"으로 한다.

②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해운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또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혅 했 개 정 아 제15조(보조항로의 지정과 운영) 제15조(공영항로의 지정과 운영)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도서주민 의 해상교통수단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국가가 운항에 따른 결손금액 ----운영하는 항로(이하 "공 을 보조하는 항로(이하 "보조 영항로"라 한다)를 지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항로"라 한다)를 지정하여 내 등(이하 "공영항로운영기관"이 항여객운송사업자 중에서 보조 항로를 운항할 사업자(이하 라 한다)에 위탁하여-----"보조항로사업자"라 한다)를 선 정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u>보조</u> 항로의 운항계획-----항로의 운항계획과 운항선박의 -----공영항로의 운영-----관리 등 보조항로의 운영과 관 련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공영항로운영 보조항로사업자와 합의하여 정 기관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계획을 수립한 하다. 후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삭 제> 따라 합의하여 정한 보조항로 의 운영에 대하여 평가하여 우 수 보조항로사업자에 대한 우

대조치 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의 방법·절차와 결과의 활용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보조항로 사업자가 제2항의 합의사항을 위반하거나 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 해당 보조항로사업자가 더 이상 보조항로를 운영하기 에 알맞지 아니하다고 인정되 면 해당 보조항로사업자의 선 정을 취소할 수 있다.

-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u>보조항로</u>
 사업자가 운항하는 선박의 수
 리 등으로 인하여 <u>보조항로의</u>
 선박운항이 중단될 것이 우려
 되면 제33조에도 불구하고 그
 보조항로사업자에게 선박대여
 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로
 부터 여객선을 대여받아 운항
 하게 할 수 있다.
-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u>보조항로의 운영</u> 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

<u><삭 제></u>

<u> </u>
<u> 운영기관이</u>
<u>공영항로의</u>
<u>ə</u>
영항로운영기관
·.
6
<u>공영항로의 운영</u> -

생한 때에는 <u>보조항로의 지정</u> 을 취소할 수 있다.

- 1. (생략)
- 2. 수송수요의 증가 등으로 인
 하여 운항결손액에 대한 보조
 금 없이 해당 항로의 운항을
 할 수 있게 된 경우
- 3. 수송수요의 뚜렷한 감소 등 으로 인하여 <u>보조항로</u> 지정의 필요성이 없게 된 경우
- ① 보조항로의 지정 및 운영과 관련하여 보조항로의 지정절차, 보조항로사업자의 선정 방법, 운항결손액의 결정과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5조의2(선박건조의 지원) ① 국가는 <u>보조항로</u>를 운항하는 선박에 대하여 선박건조에 소 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생 략)
- 제16조(여객선의 운항명령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여객운송사업자에게 여객선의 운

<u>공영항로의 지정</u>
,
1. (현행과 같음) 2
<u>해당 항로에 대하여 내항</u> <u>여객운송사업자의 사업 수요</u> <u>가 생긴 경우</u>
3 <u>공영항로</u>
7공영항로의 지정 및
제15조의2(선박건조의 지원) ① - <u>공영항로</u>

하으	명할	수	이다
$\sim =$	7 5		λi LT.

- 1. 제15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보조항로사업자가 없게 된

 경우
- 2.·3. (생략) <신설>
- ② ~ ④ (생 략) 제50조(보고 및 조사 등) ① (생 략)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운업자(제28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제31조제2항에 따른 화주의선박, 사업장, 그 밖의 장소에출입하여 장부나 서류 그 밖의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1. (생략)
 - 2. 제15조에 따른 <u>보조항로의</u>
 <u>지정</u>·운영과 제16조에 따른
 보조항로 운항명령 등을 위하

<u>사업자</u>
<u>.</u>
<u><삭 제></u>
2.·3. (현행과 같음)
4. 여객선의 일시적 운항 중단
등의 사유로 인하여 여객선의
운항을 명할 공익상 필요성이
있는 경우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50조(보고 및 조사 등) ① (현
행과 같음)
②
1 /귀늬귀 귀 ()
1. (현행과 같음)
2 <u>공영항로의</u>
<u>지정</u>
<u> 운항명령</u>

여 필요한 경우 3. ~ 7. (생 략) ③ · ④ (생 략)

제53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기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해운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해운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u>단체의 임직원</u> 및 제21조제2항에따른 여객선운항관리규정심사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

(3.	~	7. (र	현행:	과 길	날음)			
(3	•	4	(현	행과	같	음)		
제[533	조 <u>(</u>	권한	또는	- 업 - 법	무의] 우	임	•
-	위 1	<u>탁)</u>	1						
-			<u>]</u>	대통	령령	으로	ころ	하	는
_	바	케	따라	ユ	일트	부를	소	수 ㄱ	フ]
	관.	의	장에	게	위임	하기	내	다	른
-	중	강형	y 정フ]관의] ~) 에 7	<u> </u>		
-									

②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 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해 운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 인이나 단체, 「지방공기업법」 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또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u>단체,</u>
지방공사,	한국해양교통안전공
단의 임직	<u>원</u>

③ 제2항----

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	
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	
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u>.</u>